

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BNK미국핵신평테크Top3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BNK미국핵신평테크Top3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BNK미국핵신평테크Top3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BNK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6년 07월 2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08월 21일**
 6. 모집(매출) 증권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1-6910-1100 / 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 및 협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
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
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
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
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
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
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
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집중투자 하지 않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금액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화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높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 환노출형 자투자신탁으로 환율변동위험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총보수·비용 예시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모두자산신탁에서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산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안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안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인력	<table><tr><th rowspan="3">성명</th><th rowspan="3">생년</th><th rowspan="3">직위</th><th colspan="2">운용현황</th><th colspan="4">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주식형) (%)</th><th rowspan="3">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th></tr><tr><th rowspan="2">집합투자 기구 수</th><th rowspan="2">운용 규모</th><th colspan="2">운용역</th><th colspan="2">운용사</th></tr><tr><th>최근1년</th><th>최근2년</th><th>최근1년</th><th>최근2년</th></tr><tr><td>박희진</td><td>1980</td><td>책임 (상무대우)</td><td>3개</td><td>237억</td><td>-</td><td>-</td><td>-</td><td>-</td><td>5년 2개월</td></tr><tr><td>장주은</td><td>1992</td><td>부책임 (매니저)</td><td>4개</td><td>324억</td><td>-</td><td>-</td><td>-</td><td>-</td><td>8년 8개월</td></tr></table>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박희진 - 0개 0억 / 장주은 -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주식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희진	1980	책임 (상무대우)	3개	237억	-	-	-	-	5년 2개월	장주은	1992	부책임 (매니저)	4개	324억	-	-	-	-	8년 8개월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주식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희진	1980	책임 (상무대우)	3개	237억	-	-	-	-	5년 2개월																																
장주은	1992	부책임 (매니저)	4개	324억	-	-	-	-	8년 8개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해당 시장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주식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종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 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므로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6영업일(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구 산출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BNK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6910-11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nkasset.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08월 21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Wrap전용(W)	Wrap Account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투자신탁UH(주식)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Y701)							
(클래스) 종류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Y703	EY704	EY705	EY706	EY707	EY708	EY709	EY710
(클래스) 종류	Class C-P2e	Class A-G	Class C-G	Class S	Class S-P	Class S-P2	Class C-W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Y711	EY712	EY713	EY714	EY715	EY716	EY717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표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자대
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붙임]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좌(=1원) 단위로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투자신탁UH(주식)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Y701)							
(클래스) 종류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Y703	EY704	EY705	EY706	EY707	EY708	EY709	EY710
(클래스) 종류	Class C-P2e	Class A-G	Class C-G	Class S	Class S-P	Class S-P2	Class C-W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Y711	EY712	EY713	EY714	EY715	EY716	EY717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6.08.21	최초 효력발생(예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BNK 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1층 (대표전화 : 02-6910-11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6.07.29 기준)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희진	1980	책임 (상무대우)	3 개	237억	-	-	-	-	5년 2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10년 7개월) - BNK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2021.05~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③ 부책임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장주은	1992	부책임 (매니저)	4 개	324억	-	-	-	-	8년 8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삼성증권 WM 본부(1년 9개월) - 엑스포넨셜자산운용 헤지펀드운용본부(1년 7개월)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4년 10개월) - 두나미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1년 8개월) - BNK자산운용 리서치센터(2025.12~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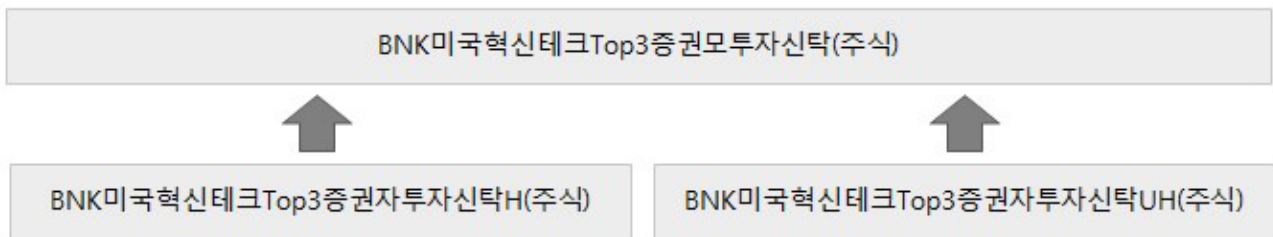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④ 부책임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Class)	한글표기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C-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S	수수료후취 -온라인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S-P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주1) 각 종류별로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 자산신탁 및 당해 모두자산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 모투자신탁(주식)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자투자신탁H(주식)		80% 이상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8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NK미국혁신테크 Top3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주요 투자대상	- 주식 60% 이상 - 채권 및 어음 등 40% 이하
	투자목적	-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미국 혁신테크 산업 Top3를 선정하여 관련 기업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미래 지향적인 기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혁신 기술 산업을 선정하여 신탁재산의 60%이상 투자하며, 미국 시장에 상장된 혁신테크 Top3(AI, 우주항공, 양자컴퓨팅)를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위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모투자신탁(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1)	투자대상 내역
①	수익증권 (모수익증권)	80% 이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 모투자신탁 명칭: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위의 ①~②의 규정 및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증권 등 가격변동으로 ①~②의 규정 및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1)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⑥	파생상품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⑦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⑧	증권의 대여 주2)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은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⑨	증권의 차입 주3)	20% 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위의 ①~⑤의 규정 및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 및 ①~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의 "가.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내용
①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모투자신탁(주식)

	내용
①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수익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	같은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⑨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 투자대상 ⑥~⑨, 위의 나. 투자제한 ②~⑦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위의 가. 투자대상 ⑥과 나. 투자제한 ②의 본문, ③의 가목 및 나목, ⑤ 내지 ⑦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나. 투자제한 ③의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미국 혁신테크 산업 Top3를 선정하여 관련 기업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환노출형 자투자신탁**으로 **원/달러 기준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외국통화 가치변화에 따라 신탁재산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므로 해당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미국 혁신테크 산업 Top3를 선정하여 관련 기업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미래 지향적인 기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혁신 기술 산업을 선정하여 신탁재산의 60%이상 투자하며, 미국 시장에 상장된 혁신테크 Top3(AI, 우주항공, 양자컴퓨팅)를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 1) 미국 상장 기업 중 AI +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산업 내 시장 선도 기술 보유 및 기업 가치 개선이 진행 중인 종목을 선별하여 포트폴리오 구축
 - 2) 개별 기업의 이익 변화, 수익성, 성장 가능성 및 기업가치 개선 여부 등을 분석하는 개별 기업 중심의 접근방식(Bottom-up)과 거시경제 환경, 산업별 성장 및 수익화 진행 상황, 시장 주도 산업군의 변화 등을 분석하는 거시경제-산업 중심의 접근방식(Top-down)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전략을 수립
 - 3) 금리, 환율 등 매크로 변수에 따른 시장 상황 고려, 섹터별 구성의 적극적인 대응 및 비중 조절

[혁신테크 TOP3 산업 관련 내용 및 예시]

AI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자율주행, 로봇, 방산 등 AI기반 상용화 산업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메모리칩, 통신망, 에너지 인프라 산업 전반을 포함하는 차세대 성장 산업 » Check Point - 로봇, 방산 등 AI 기반 상용화 제품군 확대 흐름 -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상용화 및 AI 기반 마련을 위한 통신망,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 확대 필요성 증가 [관련 기업 예시]  - 테슬라 - 아이로봇 - 마이크론테크놀로지 - 팔란티어테크 - 웨이모 - 버티브 홀딩스 - 알파벳A - 루멘텀 홀딩스 - 테라다인 - GE 베르노바 - 심보텍	유인 달 탐사 진행 등 우주 항공 산업에의 글로벌 관심도 상승과 AI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위성/우주 항공 산업 상용화 확대 » Check Point 2026년 Space X 기업 공개 52년 만에 재개된 미국 유인 달 탐사와 달 착륙 계획 수립, 2030년 중국의 달 유인 착륙 계획 등 우주 관련 산업에의 글로벌 관심도 상승 - 저궤도 위성 등 우주항공 산업 상용화 흐름 가속화  - 스페이스X - 로켓 랩 - 보잉 - 인튜이티브 머신스 - AST 스페이스모바일 - 텔레셋 -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 - 플래닛 랩스	양자역학 현상을 이용하여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계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차세대 연산 기술 » Check Point - 반도체 GPU 시대 이후 연산속도와 전력면에서 우수한 양자 컴퓨터 개발 및 국가단위 테스트 진행 - 이온트랩, 초전도체를 사용한 양자 컴퓨터 제조 및 양자관련 통신, 암호, 반도체 개발 진행 - 미정부 양자 분야 전략사업화 및 지분 투자  - IBM - 아이온큐 - 퀀텀 컴퓨팅 - 리게티컴퓨팅 - 디 웨이브 퀀텀

- ※ 상기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혁신테크 TOP3 산업군은 당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설정된 것이며, 관련 산업군 각각에 대해 1개 종목 이상을 편입할 계획이나, 시장 상황 및 산업 흐름 변화에 따라 특정 산업 군에 대한 편입 비율은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투자 프로세스]



[주요투자대상 국가 현황]

국가	주요지표	2025년	2024년	2023년
미국	연평균 명목 GDP (십억USD)	30,762.1	29,298.0	27,811.5
	연말기준 실업률(%)	4.4	4.1	3.8
	연평균 소비자물가(%)	2.7	3.0	4.1
	연평균 실질 성장률(%)	2.1	2.8	2.9
	경제현황	- AI-데이터센터 중심 투자와 기술주 강세가 미국 성장세를 견인 하며 경기 양극화 지속 - 관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재확대되며 인플레이션 우려 따른 채권 금리 상승 - 고용은 견조하나 소비와 주택경기는 둔화되며 AI 외 전통산업 회복은 제한적 - 연준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 우세		

주1) 출처: Bloomberg, / 2026.07.29기준

주2) 투자대상국가는 참고용으로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실제 정보가 차이날 수 있으며,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은 기술 성장 및 혁신 산업인 AI산업(유관 산업 포함), 우주항공, 양자 3가지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예정으로 전체 시장 지수와의 비교 적합성을 고려하여 벤치마크 지수를 미설정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 관리

1)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 개별종목, 자산군, 세부자산군 등으로 분류하여, 성과 및 위험수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 전략별 투자논리와 시장의 방향성에 괴리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 시장 변화나 개별종목 이슈가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2) 위험요인 분해

-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요인을 시장위험, 자산군별 위험, 종목별 위험, 운용전략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분석합니다.
- 각 위험 요소별 기여도를 파악하여 투자전략과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리스크 원인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합니다.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지표 등 운용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나,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한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환매 및 상환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집합투자계약의 환매 연기 및 상환금 지급에 관한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급변하여 펀드 내 편입 자산에 대한 비상 위기대응이 필요할 경우, 당사 내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기발생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운용담당부서는 물론, 필요시 전사 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단계 (주의)	• 리스크관리팀 및 운용본부 상호 점검 및 통보 • 운용본부는 시장급변에 따른 위탁자산 영향을 점검 - 위기상황으로 판단시에는 2단계 절차를 진행
2단계 (경계)	• 관련 운용본부는 지체없이 아래 내용이 포함된 위기점검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 발생현황, 원인분석, 향후 전망, 관련부서 협조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
3단계 (위기)	•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한 전사적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로 해당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펀드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가격변동 및 외화표시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등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 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 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모투자신탁에 관한 위험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증권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해당 시장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주식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종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 등 가격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 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해외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 다양한 기준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지역/국가)	이 투자신탁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 기구 또는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주식 투자 시 특정 국가(미국)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미국 관세정책,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해당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므로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시장의 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 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외국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금송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므로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 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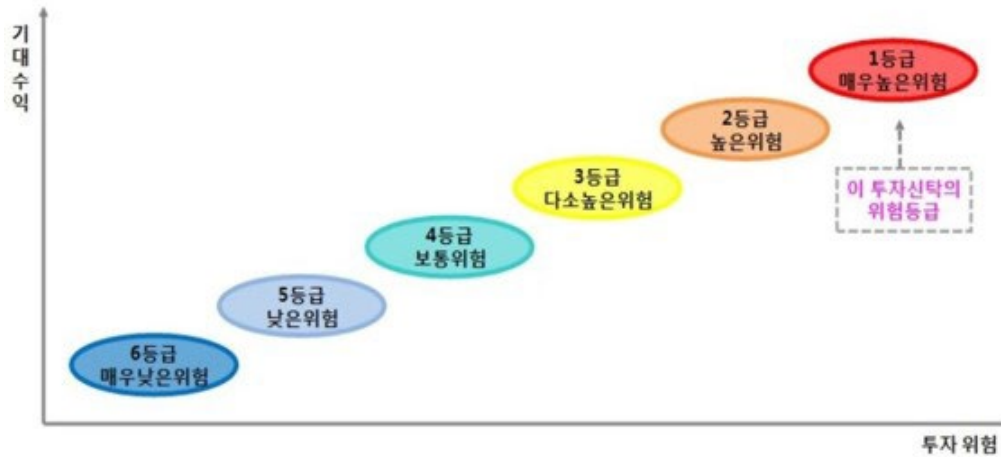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의 '나. 환매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입수한 범위 내에서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본 펀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주식 및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BNK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수익률 변동성 기준(97.5% Var 모형 사용) - 설정 후 3년 경과 시]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97.5%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VaR						
-----	--	--	--	--	--	--

-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 수익률 변동성 기준 :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Class)	한글표기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C-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S	수수료후취 -온라인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
S-P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법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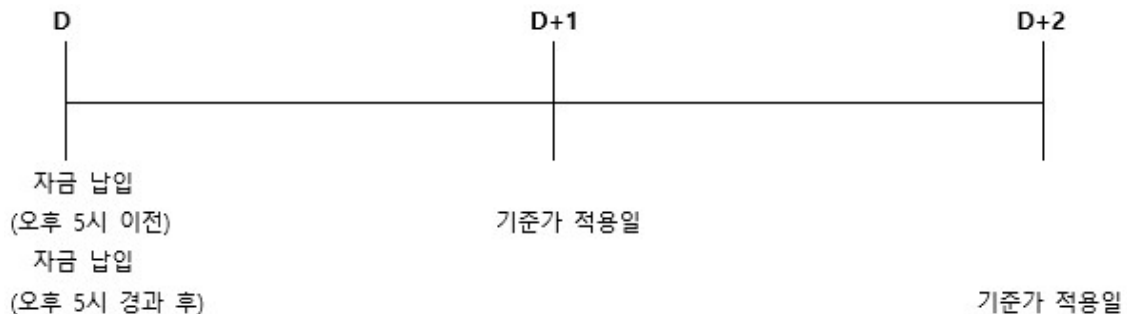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 또는 판매회사 인터넷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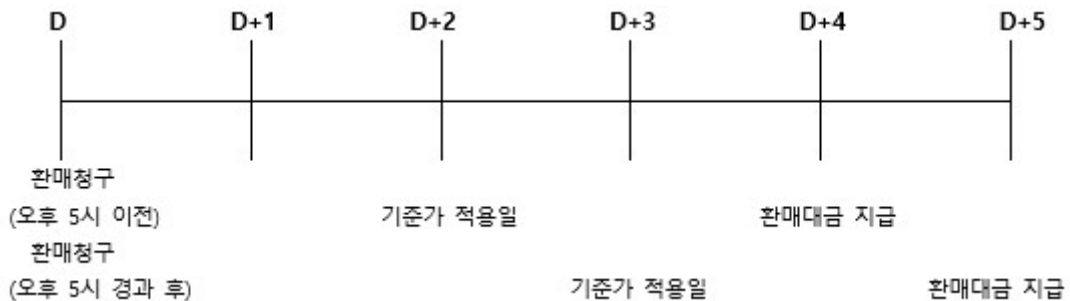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6영업일(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3영업일전일(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4영업일전일)과 그 권리

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법 시행령 제256조)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0)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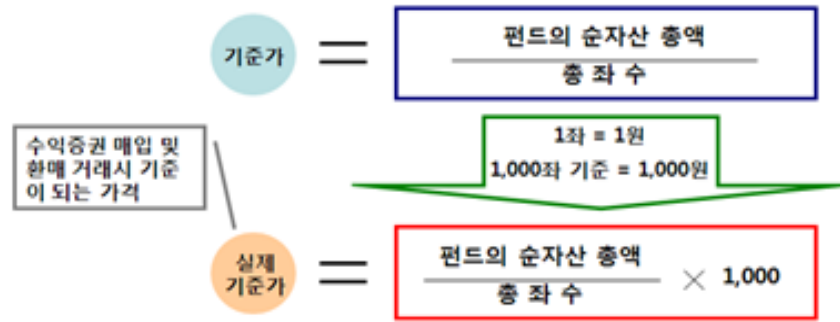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bnkasset.co.kr) · 판매회사 · 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
④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며,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발행/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평가
⑤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⑥비상장채권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⑦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해외주식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⑩외화표시 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⑪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 위원 -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평가담당팀장, 운용담당팀장, 리스크관리담당팀장, 컴플라이언스담당팀장

- 위원회 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의 설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lass)	한글표기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납입시	환매시	-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납입금액의 1.00% 이내	-	없음
A-e	수수료선취-온라인	납입금액의 0.50% 이내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	-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납입금액의 0.70% 이내	-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	-	
S	수수료후취-온라인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	-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	

주1) 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판매회사는 Class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계약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계약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3) 이 투자신탁의 종류(Class)별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집합 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 사무 관리	총 보수	동종 유형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및 비용	합성 총 보수 및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지급시기		매 3개월				-	-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0.8	0.60	0.03	0.02	1.45	1.700	-	1.45	1.45	-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0.30			1.15	1.220	-	1.15	1.15	-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1.00			1.85	1.840	-	1.85	1.85	-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0.50			1.35	1.390	-	1.35	1.35	-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펀드, 전문투 자자 및 기관		0.03			0.88	-	-	0.88	0.88	-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0.80			1.65	-	-	1.65	1.65	-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0.40			1.25	-	-	1.25	1.25	-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0.70			1.55	-	-	1.55	1.55	-
C-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0.35			1.20	-	-	1.20	1.20	-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0.42			1.27	-	-	1.27	1.27	-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0.70			1.55	-	-	1.55	1.55	-
S	수수료후취 -온라인		0.25			1.10	-	-	1.10	1.10	-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0.20			1.05	-	-	1.05	1.05	-
S-P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0.18			1.03	-	-	1.03	1.03	-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0.00			0.85	-	-	0.85	0.85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위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

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합산한 총 보수·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최초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기타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예약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최초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파생상품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종류(클래스)			1 년 후	2 년 후	3 년 후	5 년 후	10 년 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47	398	554	883	1,81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47	398	554	883	1,812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7	288	414	680	1,44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67	288	414	680	1,440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90	385	587	1,009	2,18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0	385	587	1,009	2,184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8	282	430	744	1,6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8	282	430	744	1,632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0	184	282	490	1,08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0	184	282	490	1,088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9	344	524	903	1,96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69	344	524	903	1,967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8	261	399	690	1,5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8	261	399	690	1,518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9	323	493	850	1,85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9	323	493	850	1,856
C-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3	251	383	663	1,46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3	251	383	663	1,461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99	332	470	762	1,5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9	332	470	762	1,591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9	323	493	850	1,85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9	323	493	850	1,856
S	수수료후취-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8	246	352	609	1,34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8	246	352	609	1,346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6	217	334	580	1,28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6	217	334	580	1,286
S-P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6	215	329	571	1,26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6	215	329	571	1,264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7	178	272	473	1,0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7	178	272	473	1,052

주1) 투자자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Class A와 Class C의 종류별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이 조금 안되는 시점이나, Class유형이나 추가납 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Class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1.00%, Class A-e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0.50%, Class A-G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0.70%를 반영하였습니다.

주4) Class S의 경우 1년후는 그 시점에 환매청구한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 0.15%를 반영하였고, 3년후부터는 3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 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 는 해지일이 속하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계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계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별도의 환급절차가 없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원천징수 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C-Pe, S-P 가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 조제 1 항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C-P2e, S-P2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2026.07.29 기준)

회사명	BNK 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21층 (연락처 : 02-6910-1100, www.bnkasset.co.kr)
회사 연혁	2008.07 GS 자산운용(주) 설립 2015.07 자본금 증자(+40.5억) 및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사명 변경 2017.12 BNK 금융지주 100% 자회사 편입 및 자본금 증자(+30억) 2018.11 자본금 증자(+30억) 2020.08 자본금 증자(+30억) 2021.05 자본금 증자(+156.25억)
자본금	416.75억
주요 주주현황	BNK 금융지주(100%)
이해관계인	한국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4.12.31	'25.12.31	항 목	'24.01.01~ '24.12.31	'25.01.01~ '25.12.31
현금및예치금	4,046	5,398	영업수익	26,589	33,313
유가증권	169,120	187,543			
대출채권	25	31			
유형자산	1,527	4,858	영업비용	17,348	19,862
기타자산	4,968	6,078			
자산총계	179,686	203,908	영업이익	9,241	13,451
예수부채	220	192	영업외수익	2,303	7,675
기타부채	5,905	14,172			
부채총계	6,125	14,364			
자본금	41,675	41,675	영업외비용	196	54
자본잉여금	109,079	109,079			
이익잉여금	22,807	38,790			
자본조정	0	0	경상이익	11,348	21,072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0	0	법인세 등	2,738	5,089
			당기순이익	8,610	15,983
자본총계	173,561	189,544			

라. 운용자산 규모(2026.07.29 기준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	파생형					
수탁고	6,016	27,698	1,528	0	697	1,273	3,935	0	1,885	41,177	84,20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가. 신탁회사(신탁업자)****(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 02-2073-7114
회 사 연 혁 등 (홈 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절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02-785-141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www.egap.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단, 집합투자계약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법」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 각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

- 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 제125조 각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

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액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그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투자주체	BNK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목적	펀드 성과 공유를 통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투자승인일자	2026.07.29
투자시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5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할 계획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금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의무투자 기간 경과 후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 투자신탁의 적정 설정규모 달성 등에 따라 투자금 회수 시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될 예정입니다. (단, 분할 횟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어야 하며, 1회당 회수 금액은 투자금의 50%이내로 함. 또한 회수시점에 투자금액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주1)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자신탁인 BNK미국혁신테크Top3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에 각 5

억원씩 총10억원을 고유재산 투자합니다.

주2) 의무투자금액의 경우 의무투자기간(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당연 해지사유 발생
-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주3) 의무투자금액의 경우 의무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4)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5) 상기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은 작성기준일 시점 내용이므로 관련 법규, 당사 내부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추가투자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집합투자계약(부속서류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가. 신탁업자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예비투자설명서
5. 간이투자설명서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 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